천안고용노동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 2026-80 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1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통보 공시송달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내용		
1	김*연	90.02.20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	연락두절로 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(중단) 통지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②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***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**2026. 6. 11. ~ 2026. 6. 25.(15일)**
5.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혜림(Tel. 041-620-95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